

## 제 2 부

#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 제 1 장

# 언론조정 · 중재

### 제 1 절 개요

####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보도뿐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매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원회를 통해 언론사등(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현직 법관, 변호사, 교수,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각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피해구제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조정절차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쟁해결 절차로 평가된다. 위원회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에는 44건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1,087건, 2010년 2,205건, 2015년에는 5,227건으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아울러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외에 중재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분쟁해결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없이 간편하게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재는 양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

## 2. 대량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14년에는 개별 청구주체별 청구건수가 1,000건 이상 대량으로 신청한 사건(이하 '대량사건')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책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가 11,306건, 유 전 회장과 연관된 종교단체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4,811건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2015년에도 해당 대량사건 신청은 이어져 권윤자 씨가 1,210건, 기독교복음침례회가 698건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2개년에 걸쳐 접수된 이들 대량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고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설립하여 교주로서 추앙받았으며, 도피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고 해외 망명을 시도하였다는 내용, 세월호 선장 및 직원 대부분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구원파로 불리게 된 것이 이단적인 교리 때문이라는 등의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신청인은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표 1 | 대량사건 접수현황**

(2014. 1. 1. ~ 2015. 12. 31.)

연도	신청인	청구명	접수건수	서울	지방
2014	권윤자	정정	9,006	8,780	226
		손배	2,300	2,239	61
	기독교복음침례회	정정	2,441	2,318	123
		손배	2,370	2,254	116
	소계	정정	11,447	11,098	349
		손배	4,670	4,493	177
계		16,117	15,591	526	
2015	권윤자	정정	1,208	1,191	17
		손배	2	2	
	기독교복음침례회	정정	350	331	19
		손배	348	329	19
	소계	정정	1,558	1,522	36
		손배	350	331	19
계		1,908	1,853	55	
총계			18,025 (100)	17,444 (96.8)	581 (3.2)

\* ( ) 안의 숫자는 %

이러한 대량사건을 건별로 일일이 심리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는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매체별 전체 쟁점을 분류하여 재판 또는 검찰수사 결과 등에 따라 명확히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안은 정정보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은 반론보도, 재판이나 수사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안은 추후보도, 지엽적이어서 당사자에게 실익이 없는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견 조율을 유도하였다.

이후 중재부는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중국에는 매체별로 일괄 합의를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 전부를 취하하였다. 또한, 세월호 관련 보도 시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 및 전재한 다수의 매체들은 별도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우선 원 언론사와 신청인의 합의를 도출한 뒤 그 결과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2개년간의 해당 대량사건 처리현황은 취하가 16,890건(93.7%)으로 거의 대부분이며, 조정불성립결정 859건(4.8%), 조정성립 256건(1.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 12건(0.1%), 기각 6건, 각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 대량사건 처리현황

(2014. 1. 1. ~ 2015. 12. 31.)

연 도	신청인	청구 건수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14	권윤자	11,306	90		348			10,868
	기독교복음 침례회	4,811	160	8	262	4		4,377
	소 계	16,117	250	8	610	4		15,245
2015	권윤자	1,210	2	2	127			1,079
	기독교복음 침례회	698	4	2	122	2	2	566
	소 계	1,908	6	4	249	2	2	1,645
총 계		18,025 (100)	256 (1.4)	12 (0.1)	859 (4.8)	6 (0.0)	2 (0.0)	16,890 (93.7)

\* ( ) 안의 숫자는 %

이러한 대량사건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증과 더불어 치열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사실 확인을 잘 하지 않거나 타 매체의 보도를 인용 또는 전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언론의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세월호와 같은 재난·재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많은 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이번 대량사건의 처리 현황과 과정을 분석하여 대량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2015년에 작성, 이에 대비하였다.

한편, 2015년에도 2014년과 동일하게 조정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를 대량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는 2015년 전체 처리사건 5,227건 중 대량사건은 1,908건으로 36.5%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특정 신청인에 의한 대량사건이 전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수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 1. 청구현황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5,2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전체 청구건수는 2014년 대비 13,821건 감소하였지만, 이는 대량사건이 2014년 16,117건에서 2015년 1,908건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하 ‘일반사건’)은 2014년도(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한 3,3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위원회 일반사건 조정신청건수는 2010년 2,205건으로 처음 2,000건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2011.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청구건수	2,124	2,401	2,433	19,048	5,227
전년 대비 증감	-81	277	32	16,615	-13,821

### 2. 청구권별 현황

2015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098건(59.3%), 손해배상청구 1,560건(29.8%), 반론보도청구 419건(8.0%), 추후보도청구 150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67.7%)에 비해 8.4% 감

소하였지만, 3년간 평균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어 여전히 전체 청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 순위의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29.8%로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반론보도청구 비율은 2014년 대비 6.4%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대량사건은 정정보도청구 1,558건(81.7%), 손해배상청구 350건(18.3%)이었으며, 일반사건은 정정보도청구 1,540건(46.4%), 손해배상청구가 1,210건(36.5%), 반론보도청구가 419건(12.6%), 추후보도청구가 150건(4.5%) 순이었다.

표 4 |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청구명 \ 연도	2013	2014	2015	합 계
정 정	1,195 (49.1)	12,888 (67.7)	3,098 (59.3)	17,181 (64.3)
반 론	274 (11.3)	305 (1.6)	419 (8.0)	998 (3.7)
추 후	180 (7.4)	130 (0.7)	150 (2.9)	460 (1.7)
손 배	784 (32.2)	5,725 (30.1)	1,560 (29.8)	8,069 (30.2)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49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892건(17.1%), 인터넷뉴스서비스 799건(15.3%), 신문 757건(14.5%), 뉴스통신 264건(5.1%)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처음 포함되었는데, 첫 해 48건에 불과하던 청구건수가 2015년에는 2,49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는 모든 매체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량사건의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은 인터넷신문 724건(37.9%), 방송 477건(25.0%), 인터넷뉴스서비스 427건(22.4%), 일간신문 187건(9.8%), 뉴스통신 79건(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사건의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은 인터넷신문 1,766건(53.2%), 일간신문 432건(13.0%), 방송 415건(12.5%), 인터넷뉴스서비스 372건(11.2%), 뉴스통신 185건(5.6%), 주간신문 133건(4.0%) 등이었다.

표 5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 연 도		2013	2014	2015	합 계
신 문	일간신문	380 (15.6)	1,378 (7.2)	619 (11.8)	2,377 (8.9)
	주간신문	142 (5.8)	139 (0.7)	138 (2.6)	419 (1.6)
방 송		288 (11.8)	3,776 (19.8)	892 (17.1)	4,956 (18.6)
잡 지		10 (0.4)	25 (0.1)	18 (0.3)	53 (0.2)
뉴스통신		112 (4.6)	1,117 (5.9)	264 (5.1)	1,493 (5.6)
인터넷신문		1,130 (46.4)	8,436 (44.3)	2,490 (47.6)	12,056 (45.1)
인터넷뉴스서비스		369 (15.2)	4,177 (21.9)	799 (15.3)	5,345 (20.0)
기 타		2 (0.1)		7 (0.1)	9 (0.0)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15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4,891건 (93.6%)으로 예년과 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초상권 침해 205건 (3.9%), 사생활 침해 56건(1.1%), 재산상 손해 51건(1.0%), 음성권 침해 14건 (0.3%), 성명권 침해 10건(0.2%) 순이었다.

대량사건은 1,908건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으며, 일반사건은 명예훼손 2,983건(89.9%), 초상권 침해 205건(6.2%), 사생활 침해 56건(1.7%), 재산상 손해 51건(1.5%), 음성권 침해 14건(0.4%), 성명권 침해 10건(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침해유형 \ 연 도	2013	2014	2015	합 계
명예훼손	2,252 (92.6)	18,793 (98.7)	4,891 (93.6)	25,936 (97.1)
초상권 침해	82 (3.4)	208 (1.1)	205 (3.9)	495 (1.9)
음성권 침해	5 (0.2)	5 (0.0)	14 (0.3)	24 (0.1)
성명권 침해	23 (0.9)	8 (0.0)	10 (0.2)	41 (0.2)
사생활 침해	45 (1.8)	14 (0.1)	56 (1.1)	115 (0.4)
재산상 손해	26 (1.1)	17 (0.1)	51 (1.0)	94 (0.4)
기 타		3 (0.0)		3 (0.0)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15년 조정청구현황을 신청인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청구가 3,123건(59.7%)으로, 전체 청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종교단체가 728건(13.9%)이었고, 일반단체 570건(10.9%), 기업체 379건(7.3%), 지자체 117건(2.2%), 언론사 87건(1.7%) 등의 순이었다. 전체 청구건수에서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특히 종교단체의 청구가 많았던 2014년(26.0%)에 비하면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 1,908건은 개인이 1,210건(63.4%), 종교단체가 698건(36.6%)이었다. 일반사건은 개인 1,913건(57.6%), 일반단체 570건(17.2%), 기업체 379건(11.4%), 지자체 117건(3.5%), 언론사 87건(2.6%), 국가기관 85건(2.6%), 교육기관 84건(2.5%), 공공단체 54건(1.6%), 종교단체 30건(0.9%) 순으로 나타나, 전체 청구건수의 신청인 유형별 순위와는 차이를 보였다.

표 7 |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신청인 \ 연도	2013	2014	2015	합계
개 인	1,395 (57.3)	13,021 (68.4)	3,123 (59.7)	17,539 (65.7)
국가기관	36 (1.5)	71 (0.4)	85 (1.6)	192 (0.7)
지 자 체	103 (4.2)	81 (0.4)	117 (2.2)	301 (1.1)
공공단체	85 (3.5)	103 (0.5)	54 (1.0)	242 (0.9)
일반단체	255 (10.5)	315 (1.7)	570 (10.9)	1,140 (4.3)
종교단체	31 (1.3)	4,954 (26.0)	728 (13.9)	5,713 (21.4)
기 업 체	383 (15.7)	331 (1.7)	379 (7.3)	1,093 (4.1)
언 론 사	64 (2.6)	90 (0.5)	87 (1.7)	241 (0.9)
교육기관	81 (3.3)	82 (0.4)	84 (1.6)	247 (0.9)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5년 조정청구건수 5,227건은 서울 8개 중재부가 4,225건(80.8%), 지역 10개 중재부가 1,002건(19.2%)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재부별로는 경기중재부 259건(5.0%), 광주중재부 214건(4.1%), 대전중재부 84건(1.6%) 등의 순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대량사건은 서울 소재 매체가 많은 관계로 1,908건 중 97.1%인 1,853건을 서울중재부에서 접수·처리하였다. 일반사건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서울 8개 중재부 2,372건(71.5%), 경기중재부 244건(7.4%), 광주중재부 214건(6.4%), 대전중재부 80건(2.4%) 순이었다.

표 8 |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중재부	2013	2014	2015	합 계
서울중재부	1,806 (74.2)	17,750 (93.2)	4,225 (80.8)	23,781 (89.0)
부산중재부	69 (2.8)	138 (0.7)	78 (1.5)	285 (1.1)
대구중재부	48 (2.0)	113 (0.6)	80 (1.5)	241 (0.9)
광주중재부	78 (3.2)	83 (0.4)	214 (4.1)	375 (1.4)
대전중재부	75 (3.1)	96 (0.5)	84 (1.6)	255 (1.0)
경기중재부	195 (8.0)	548 (2.9)	259 (5.0)	1,002 (3.8)
강원중재부	20 (0.8)	16 (0.1)	42 (0.8)	78 (0.3)
충북중재부	37 (1.5)	71 (0.4)	71 (1.4)	179 (0.7)
전북중재부	39 (1.6)	53 (0.3)	78 (1.5)	170 (0.6)
경남중재부	63 (2.6)	150 (0.8)	62 (1.2)	275 (1.0)
제주중재부	3 (0.1)	30 (0.2)	34 (0.7)	67 (0.3)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7. 접수 유형별 청구현황

2015년도에 신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사건 접수방법은 위원회의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인 ‘언론중재 Eye-Net’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인 것으로 나타났다(2,772건, 53.0%). 이는 대량사건 1,908건이 모두 전자문서를 통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전자우편(E-메일)을 통한 접수가 1,913건(36.6%)이었으며, 방문 접수 409건(7.8%), 우편 접수 130건(2.5%) 등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경우, 예년과 같이 전자우편에 의한 조정신청 비율이 57.6%(1,913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언론중재 Eye-Net’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문서 접수는 26.0%(864건)로, 2014년 29.7%(870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 9 |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기타	청구건수
2013	336 (13.8)	137 (5.6)	1,196 (49.2)	750 (30.8)	12 (0.5)	2 (0.1)	2,433 (100)
2014	392 (2.1)	136 (0.7)	1,742 (9.1)	16,738 (87.9)	40 (0.2)		19,048 (100)
2015	409 (7.8)	130 (2.5)	1,913 (36.6)	2,772 (53.0)	1 (0.0)	2 (0.0)	5,227 (100)

\* ( ) 안의 숫자는 %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대량사건 1,908건을 포함한 총 5,227건의 2015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2,904건(55.6%), 조정성립 940건(18.0%), 조정불성립결정 710건(13.6%), 기각 322건(6.2%), 직권조정결정 319건(6.1%), 각하 32건(0.6%) 순이었다.

특히 대량사건의 대부분(1,645건)이 취하로 처리되어 전체 사건에서 취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5년 피해구제율은 77.9%로 2014년 피해구제율(88.7%)과 비교하여 10.8%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대량사건으로 인해 피해구제율이 예외적으로 높았던 것이며, 2015년 피해구제율은 2013년 77.6%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경우 3,319건이 접수되어 2014년 대비 388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934건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취하된 1,259건 가운데 1,008건이 피해구제가 되었다.

**표 10 |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연도	청구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	37.6	2.2	2.3	12.1	0.8	0.1	44.8	

연 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의	이의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	6.1	0.7	0.6	5.8	0.6	0.4	85.8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18.0	4.2	1.9	13.6	6.2	0.6	55.6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circ \text{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times 100$$

\* 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 1.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요건이 적합한 사건 중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등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15년 피해구제율은 77.9%로 2014년 피해구제율(88.7%)에 비해 10.8%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2014년 대비 대량사건 청구건수 감소 및 대량사건 피해구제율의 하락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는 전체사건(19,048건)에서 84.6%를 차지하였던 대량사건(16,117건)이 높은 피해구제율(92.1%)을 기록하였기에 2014년 전체사건의 피해구제율(88.7%)도 과거와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전체사건(5,227건) 중 대량사건(1,908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이 대량사건들의 피해구제율(85.9%) 또한 2014년의 대량사건 피해구제율에 비해 다소 낮아 2015년 전체사건의 피해구제율 역시 2014년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2015년의 피해구제율은 2013년 피해구제율(77.6%)과 비슷한 수치이다.

**표 11 |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3		2,433	22	2,411	1,870	77.6%
2014		19,048	182	18,866	16,728	88.7%
2015		5,227	354	4,873	3,797	77.9%

## 2. 청구별 처리결과

### 가. 개요

각 청구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5.2%,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17.2%로, 2014년(정정보도청구 4.9%, 반론보도청구 35.4%, 추후보도청구 22.3%, 손해배상청구 6.9%)과 비교해 정정보도청구의 조정성립률은 10.3% 상승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량사건이 없었던 2013년 42.8%에 비하면 약 1/3에 불과한 수준인데,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대량사건 대부분이 취하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2015년 일반사건 3,319건의 청구별 조정성립률은 정정보도청구 30.3%,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22.1%로 2014년 일반사건 2,931건의 조정성립률(정정보도청구 33.2%, 반론보도청구 35.4%, 추후보도청구 22.3%, 손해배상청구 27.5%)과 비교해 볼 때, 반론보도청구는 4.7% 상승한 반면, 정정보도청구는 2.9%, 손해배상청구는 5.4%, 추후보도청구는 0.3% 각 하락하였다.

**표 12 | 청구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정 정	3,098 (100)	470 (15.2)	136 (4.4)	420 (13.6)	63 (2.0)	17 (0.5)	1,992 (64.3)
반 론	419 (100)	168 (40.1)	35 (8.4)	44 (10.5)	37 (8.8)	3 (0.7)	132 (31.5)
추 후	150 (100)	33 (22.0)	15 (10.0)	1 (0.7)	12 (8.0)	1 (0.7)	88 (58.7)
손 배	1,560 (100)	269 (17.2)	133 (8.5)	245 (15.7)	210 (13.5)	11 (0.7)	692 (44.4)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 사례 | 정정보도

A언론사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의 남성 기준”에 관한 주제로 방송하면서, 일반인 출연자인 신청인들이 남성의 조건으로 ‘외제차’, ‘연봉 5천만원’ 등 학력과 경제력을 중시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해당 발언은 제작진들의 요구에 따라 연출된 것인데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 반론보도

B언론사는 서울의 한 구치소 관계자가 수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형집행이 이뤄져야할 교정시설 내에서도 재산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사례 | 추후보도

C언론사는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의 신체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 손해배상 1

D방송사는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드러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사례 | 손해배상 2

E언론사는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방송에서 신청인의 실명과 나이가 명시된 판결문을 노출시켰다. 이에 신청인은 성명권이 침해되었고 해당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 1) 처리현황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17.2%, 직권조정결정 8.5%, 조정불성립결정 15.7%, 기각 13.5%, 취하 44.4%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 비율은 2014년 6.9%에 비해 10.3% 상승하였으나, 대량사건이 없었던 2013년 32.9%에 비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2015년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만을 본다면 손해배상청구 1,210건 가운데 조정성립 267건(22.1%), 직권조정결정 132건(10.9%), 조정불성립결정 182건(15.0%), 기각 209건(17.3%), 취하 409건(33.8%)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2014년 일반사건 조정성립률 27.5%에 비해 5.4% 하락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만을 본다면 2014년 22.7%에 비해 7.7%나 감소하였다.

표 13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3	784 (100)	258 (32.9)	17 (2.2)	15 (1.9)	121[6] (15.4)	6 (0.8)		367[300] (46.8)
2014	5,725 (100)	393 (6.9)	44 (0.8)	49[1] (0.9)	414[7] (7.2)	80 (1.4)	36 (0.6)	4,709[4350] (82.3)
2015	1,560 (100)	269 (17.2)	94 (6.0)	39[1] (2.5)	245[2] (15.7)	210 (13.5)	11 (0.7)	692[612] (44.4)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 안의 숫자는 %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해배상청구사건 전담중재부를 운영하였고, 이와 함께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하였다. 비록 2015년 1월 손해배상 전담중재부를 지정 해제하였으나, 각 중재부는 그간 손해배상 전담중재부에서 축적하였던 처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2015년 손해배상청구 1,210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00건으로 8.3%에 불과하였다.

표 14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13	783	92	11.7%
2014	1,055	112	10.6%
2015	1,210	100	8.3%

\* 2014년, 2015년은 전체사건 중 대량사건을 제외함

## 2) 청구액 및 조정액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2원, 최고 600억원, 평균 1억 2,958만원, 중앙액 2,000만원이었다. 반면 조정액은 최저 50만원, 최고 400만원이었으며, 평균 160만원, 중앙액 1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청구액의 중앙액은 최근 3년간 2,000만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13. 1. 1. ~ 2015. 12. 31. / 단위 : 원)

연 도 \ 구 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3	100,000	5,815,000,000	60,756,386	20,000,000
2014	20,000	10,000,000,000	36,789,730	20,000,000
2015	2	60,000,000,000	129,582,591	20,000,000

표 16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3. 1. 1. ~ 2015. 12. 31. / 단위 : 원)

연 도 \ 구 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3	100,000	20,000,000	2,532,000	1,750,000
2014	50,000	30,000,000	1,953,000	1,000,000
2015	500,000	4,000,000	1,602,000	1,000,000

표 17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5. 1. 1. ~ 2015. 12. 31. /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5	500,000	3,000,000	1,450,0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27	500,000	4,000,000	1,572,000	1,000,000	500,000
음성권 침해	4	500,000	3,000,000	1,750,000	1,750,000	
성명권 침해	1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사생활 침해	47	500,000	3,000,000	1,625,000	1,000,000	1,000,000
재산상 손해	6	2,000,000	3,000,000	2,333,000	2,000,000	2,000,000

###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년 전체 손해배상청구건수는 1,560건(100%)이며, 이를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265건(8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사건 200건(12.8%), 사생활 침해 53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명예훼손 사건은 취하가 652건(51.5%)으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 220건(17.4%), 조정불성립결정 218건(17.2%) 순이었으며, 초상권 침해 사건은 기각이 130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26건(13.0%), 조정성립 24건(12.0%)이었다. 반면 사생활 침해 사건은 직권조정결정이 34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상 손해 사건은 조정성립이 11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대량사건 350건은 전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를 제외한 명예훼손 일반사건 915건(100%)에 한정할 경우, 취하 369건(40.3%), 조정성립 218건(23.8%), 조정불성립결정 155건(16.9%), 직권조정결정 84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하
명예훼손	1,265 (100)	220 (17.4)	85 (6.7)	218 (17.2)	80 (6.3)	10 (0.8)	652 (51.5)
초상권 침해	200 (100)	24 (12.0)	9 (4.5)	10 (5.0)	130 (65.0)	1 (0.5)	26 (13.0)
음성권 침해	14 (100)	7 (50.0)	2 (14.3)				5 (35.7)
성명권 침해	7 (100)	3 (42.9)					4 (57.1)
사생활 침해	53 (100)	4 (7.5)	34 (64.2)	14 (26.4)			1 (1.9)
재산상 손해	21 (100)	11 (52.4)	3 (14.3)	3 (14.3)			4 (19.0)
계	1,560 (100)	269 (17.2)	133 (8.5)	245 (15.7)	210 (13.5)	11 (0.7)	692 (44.4)

\* ( ) 안의 숫자는 %

###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로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잡지 61.1%, 주간신문 35.5%, 일간신문 28.1%, 인터넷신문 19.4%, 뉴스통신 17.0%, 방송 13.0%, 인터넷뉴스서비스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주간신문 26.1%, 일간신문 22.9%, 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각 12.4%, 인터넷신문 12.3%, 뉴스통신 6.1% 순이었다.

대량사건 외 일반사건만을 살펴보면 각 매체별 조정성립률은 잡지 77.8%, 일간신문 40.3%, 주간신문 36.1%, 방송 28.0%, 인터넷신문 27.2%, 뉴스통신 24.3%, 인터넷뉴스서비스 16.9% 순으로 나타나,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방송의 조정성립률이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 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각 11.8%, 14.0%로 일간신문 17.1%, 주간신문 27.1%, 방송 17.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19 |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신 문	일간신문	619 (100)	174 (28.1)	32 (5.2)	142 (22.9)	10 (1.6)	2 (0.3)	259 (41.8)
	주간신문	138 (100)	49 (35.5)	29 (21.0)	36 (26.1)	1 (0.7)	2 (1.4)	21 (15.2)
방 송		892 (100)	116 (13.0)	42 (4.7)	111 (12.4)	72 (8.1)	5 (0.6)	546 (61.2)
잡 지		18 (100)	11 (61.1)	2 (11.1)			2 (11.1)	3 (16.7)
뉴스통신		264 (100)	45 (17.0)	14 (5.3)	16 (6.1)	21 (8.0)		168 (63.6)
인터넷신문		2,490 (100)	482 (19.4)	146 (5.9)	306 (12.3)	108 (4.3)	21 (0.8)	1,427 (57.3)
인터넷 뉴스서비스		799 (100)	63 (7.9)	53 (6.6)	99 (12.4)	110 (13.8)		474 (59.3)
기타		7 (100)		1 (14.3)				6 (85.7)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4,891건으로 전체 5,227건(100%)의 93.6%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852건이 취하되었고 866건이 조정성립되었다. 2015년 대량사건 1,908건은 전부 명예훼손 사건이므로, 이를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100%) 중 명예훼손 사건은 2,983건(89.9%), 초상권 침해 사건 205건(6.2%),

사생활 침해 사건 56건(1.7%), 재산상 손해 사건 51건(1.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사건의 침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한 조정신청 사건이 가장 높은 60.8%, 음성권 침해 50.0%, 성명권 침해 40.0%, 명예훼손 28.8%, 사생활 침해 12.5%, 초상권 침해 12.2% 등의 순이었고,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사생활 침해 25.0%, 명예훼손 14.5%, 재산상 손해 5.9%, 초상권 침해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 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명예훼손	4,891 (100)	866 (17.7)	268 (5.5)	683 (14.0)	191 (3.9)	31 (0.6)	2,852 (58.3)
초상권 침해	205 (100)	25 (12.2)	11 (5.4)	10 (4.9)	130 (63.4)	1 (0.5)	28 (13.7)
음성권 침해	14 (100)	7 (50.0)	2 (14.3)				5 (35.7)
성명권 침해	10 (100)	4 (40.0)					6 (60.0)
사생활 침해	56 (100)	7 (12.5)	34 (60.7)	14 (25.0)			1 (1.8)
재산상 손해	51 (100)	31 (60.8)	4 (7.8)	3 (5.9)	1 (2.0)		12 (23.5)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사례 | 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 손해**

F언론사는 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세입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의 명칭과 호수 등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오피스텔 임대가 되지 않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손해배상액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5년 신청인 유형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227건(100%) 중 개인 3,123건(59.7%), 종교단체 728건(13.9%), 일반단체 570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취하 비율이 57.2%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15.2%였던 반면, 종교단체 사건은 취하 비율이 79.0%, 조정성립률은 2.1%에 불과하였다. 일반단체 사건은 취하 47.7%, 조정성립률 28.4%를 기록하였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100%)의 신청 현황은 개인 1,913건(57.6%), 일반단체 570건(17.2%), 기업체 379건(11.4%), 지자체 117건(3.5%), 언론사 87건(2.6%)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취하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24.8%였다. 종교단체의 경우 취하 및 조정불성립 비율이 각 30.0%를 차지하였고, 조정성립률은 36.7%를 보였다.

표 21 |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신청인 유형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개인	3,123 (100)	476 (15.2)	170 (5.4)	369 (11.8)	295 (9.4)	27 (0.9)	1,786 (57.2)
국가기관	85 (100)	47 (55.3)	15 (17.6)	4 (4.7)	1 (1.2)		18 (21.2)
지자체	117 (100)	37 (31.6)	16 (13.7)	23 (19.7)			41 (35.0)
공공단체	54 (100)	18 (33.3)	15 (27.8)	2 (3.7)			19 (35.2)
일반단체	570 (100)	162 (28.4)	52 (9.1)	66 (11.6)	16 (2.8)	2 (0.4)	272 (47.7)
종교단체	728 (100)	15 (2.1)	3 (0.4)	131 (18.0)	2 (0.3)	2 (0.3)	575 (79.0)
기업체	379 (100)	121 (31.9)	20 (5.3)	63 (16.6)	8 (2.1)	1 (0.3)	166 (43.8)
언론사	87 (100)	28 (32.2)	24 (27.6)	31 (35.6)			4 (4.6)
교육기관	84 (100)	36 (42.9)	4 (4.8)	21 (25.0)			23 (27.4)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 6.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광주중재부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강원(42.9%), 충북(36.6%), 전북(35.9%), 경기(34.4%)중재부 등의 순이었다.

서울중재부의 경우, 대량사건 1,853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13.8%

이었으며, 이중 일반사건 2,372건의 조정성립률은 24.3%로 나타났다. 2014년 일반사건 조정성립률(28.0%)과 비교해서는 3.7% 하락하였다.

한편, 지역중재부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중재부는 259건을 처리한 경기중재부였으며 조정성립률은 34.4%였다.

**표 22 |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분 중재부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서울	4,225 (100)	582 (13.8)	263 (6.2)	583 (13.8)	307 (7.3)	17 (0.4)	2,473 (58.5)
부산	78 (100)	18 (23.1)		7 (9.0)			53 (67.9)
대구	80 (100)	17 (21.3)		15 (18.8)			48 (60.0)
광주	214 (100)	115 (53.7)	28 (13.1)		8 (3.7)	7 (3.3)	56 (26.2)
대전	84 (100)	25 (29.8)	2 (2.4)	4 (4.8)			53 (63.1)
경기	259 (100)	89 (34.4)	12 (4.6)	20 (7.7)	4 (1.5)	4 (1.5)	130 (50.2)
강원	42 (100)	18 (42.9)		4 (9.5)			20 (47.6)
충북	71 (100)	26 (36.6)		29 (40.8)		2 (2.8)	14 (19.7)
전북	78 (100)	28 (35.9)	6 (7.7)	8 (10.3)	2 (2.6)	2 (2.6)	32 (41.0)
경남	62 (100)	15 (24.2)		32 (51.6)	1 (1.6)		14 (22.6)
제주	34 (100)	7 (20.6)	8 (23.5)	8 (23.5)			11 (32.4)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 7.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2015년에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신청되었으며, 특히 원 언론보도가 포털의 블로그·카페 등에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거나 댓글로 인한 피해호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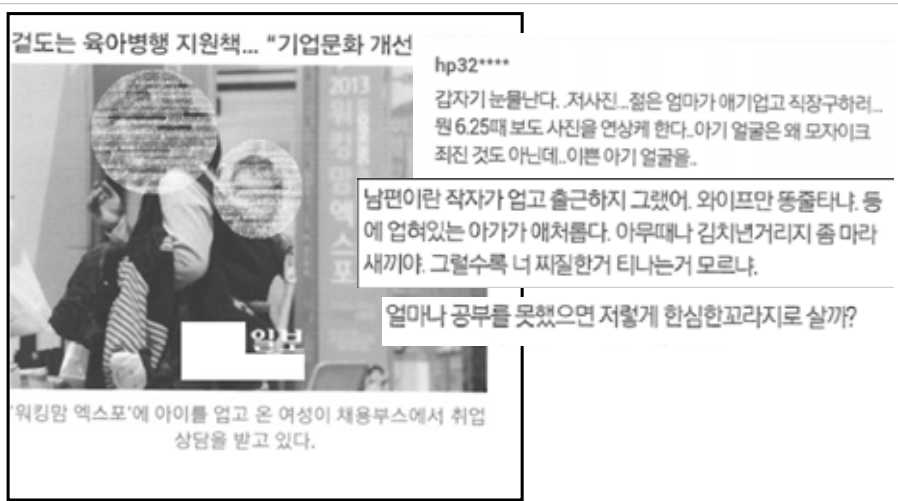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상 이러한 복제기사, 댓글 등에 대한 완전한 피해구제

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양 당사자 간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합의 의사가 있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따라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아래 사례들은 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며, 더욱 심각한 사건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 대부분이 위원회의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상 미비점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법률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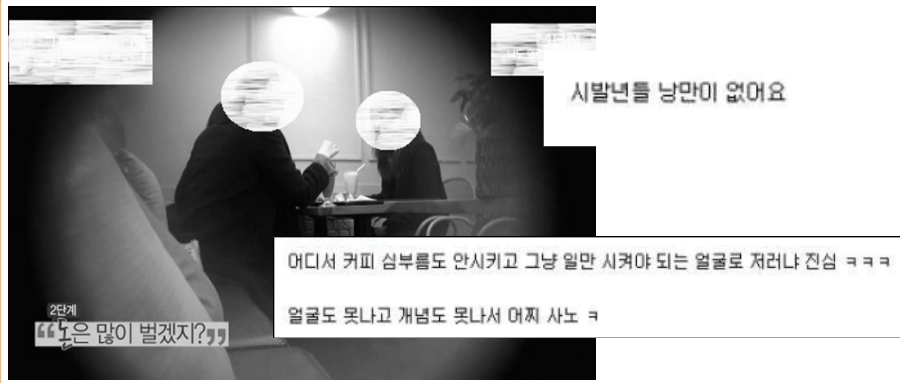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사례의 심리 시 당사자에게 권고하고 합의 및 결정 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률 보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례 |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1



신청인은 아기를 업고 '워킹맘 엑스포'에 참석한 것을 원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게재하였고, 특히 이를 매개한 포털에 악의적 댓글이 게재되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중재부는 원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 언론사는 포털 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하라고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로 확정되었고, 포털은 원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댓글을 삭제하였다.

사례 |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2



제작진의 연출에 따라 재연된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 신청인들이 남자의 학벌,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고, 해당 화면이 복제기사로 무수히 전파되었다. 원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고, 신청인들이 복제기사 포털 URL을 제기할 경우 원 언론사가 게시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제4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2005년 중재제도 도입 이후 중재사건 청구현황은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으로 청구 자체가 미진하였다. 이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이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되면서, 위원회는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으로 중재사건 청구현황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11건, 2015년 26건으로 최근 2년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재제도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발생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나, 언론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어 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중재사건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비교적 적거나, 유사한 내용이 여러 인터넷 매체에 동시에 보도된 사안을 중심으로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중재사건의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26건 모두 명예훼손이었으며, 정정보도 11건(42.3%), 반론보도 7건(26.9%), 추후보도 6건(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은 인터넷신문 15건(57.7%), 신문·잡지 5건(19.2%), 방송 4건(15.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처리결과는 모두 중재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표 23 | 중재사건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15.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청 구 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15		명예훼손	26 (100)	11 (42.3)	7 (26.9)	6 (23.1)	2 (7.7)

\* ( ) 안의 숫자는 %

표 24 |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15.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계	신문·잡지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2015		26 (100)	5 (19.2)	4 (15.4)	1 (3.8)	15 (57.7)	1 (3.8)

\* ( ) 안의 숫자는 %

표 25 | 중재사건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5		26	26				

## 사례 | 중재

A인터넷신문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불거진 2010년 7월 전후, B방송사 법무팀장과 감사팀장, 당시 보도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정권의 불법사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B방송사 노조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B방송사 주요 간부인 신청인들은 검찰 수사결과, 노조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신청인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인터넷신문과 사전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하고 추후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B방송사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따른 노조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이 2015년 4월 16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A인터넷신문은 신청인들이 B방송사 불법사찰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당사자의 주장 및 혐의사항, 상호이익, 중재대상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후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결정을 하였다.

## 제5절 평 가

2015년 위원회는 총 5,2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대량사건 1,908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기준으로 보면 3,319건으로 2014년 일반사건 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하였고 전체 조정신청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7.9%를 기록하였다. 2015년도 조정 및 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각각 84.1점, 78.1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그간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방안 마련, 포털전담 중재부 지정·운영, 2012년 손해배상 전담부 신설 등 조정업무의 일관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도 위원회는 언론분쟁 해결 및 실질적 피해구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합의문 1천여 건을 분석해 청구권별로 조정성립된 사건의 유형을 구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문안을 유형화하여 효율적인 조정심리 진행을 제고하였다. 또한, 조정과정에서 있었던 특이사례들을 별도 구분해 게재한 ‘합의문 유형화 보고서’를 작성, 이를 향후 유사한 사안의 조정심리에 참고하여 가장 최적화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포털 및 손해배상 사건 전담중재부 운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해 2015년 1월 1일자로 지정을 해지하였으나, 그간 손해배상 전담중재부에서 축적하였던 처리 노하우를 전체 중재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주요 손해배상 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손해배상 유형별 주요 조정사례’를 작성하였다.

또한,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복제기사의 전파나 기사덧글로 인한 피해 등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는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끝으로 2015년도 직권조정결정 사건은 전체사건 5,227건 중에서는 319건(6.1%)이었고, 전체사건에서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 중에서는 315건(9.5%)으로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그간 참고인 심문에 관한 세칙, 증거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칙, 증거조사 활성화 관련 예규 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함께 직권조정결정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 2 장

# 시정권고

###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함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기사형 광고 심의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기사 형태로 광고를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의 법익침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심의대상 전 매체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 유형, 지면, 광고 대상 상품 유형, 바이라인(기자명이 적시된 기사) 기재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대상 매체 중 기사형 광고는 총 3,329건이 확인되었으며, 일간지의 경우 주로 신제품 소개형태로 게재되고 있었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유통업체나 신상품 소개형 기사와 기존 상품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특이한 점은 모두 바이라인을 명시한 상태로 게재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관기관 심의규정과 사례, 외국의 법령과 기준 등을 참고해 ‘기사형 광고’ 심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기사형 광고’ 심의는 형식적 기준, 내용적 기준, 업종별 기준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명백한 사안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업종별 기준으로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3호 등이 있다. 특히,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기사형 광고’ 세부 심의기준 ]

1단계 형식적 기준	광고 미표시 광고성 기사와 바이라인 삽입 광고성 기사를 심의대상으로 함
2단계 내용적 기준	위의 기사 가운데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성 기사 2. 기만적인 광고성 기사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성 기사 4. 비방적인 표시·광고성 기사를 안건으로 채택함
3단계 업종별 기준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건을 채택함

2015년 한 해 총 95건의 기사형 광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통신 15건, 중앙일간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 2.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300여 개 매체를 심의해 438건의 법의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12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준 강화, 여론조사 공표기준 개정, 기사형 광고 심의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2015년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014년 302건에 비해 136건(45.0%) 늘어난 438건이다. 결정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사형 광고 위반으로 9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전년도 대비 67건, 마약 및 약물보도 위반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60건이 늘었다.

## 3. 침해 유형별 분석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및 약물보도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가 135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95건, 21.7%)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시정권고(92건, 2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살 관련 보도는 62건(14.2%), 범죄수법 상세묘사 16건(3.7%), 충격·혐오감 14건(3.2%)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신규로 침해유형에 포함된 기사형 광고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마약 및 약물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16건이었던 건수가 2013년 89건, 2014년 7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5년 135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도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약 관련 보도로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권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2015년 95건의 시정권고가 있었다. 언론사가 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고 있고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에도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항목을 신설하였다. 위원회는 관련 법 등을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표 26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침해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기타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사형 광고	기타	
2013	289 (100)	23 (8.0)	35 (12.1)	1 (0.3)		31 (10.7)	78 (27.0)	89 (30.8)	32 (11.1)			
2014	302 (100)	25 (8.3)	16 (5.3)	5 (1.7)	29 (9.6)	60 (19.9)	73 (24.2)	75 (24.8)	13 (4.3)		6 (2.0)	
2015	438 (100)	92 (21.0)	5 (1.1)	11 (2.5)		16 (3.7)	62 (14.2)	135 (30.8)	14 (3.2)	95 (21.7)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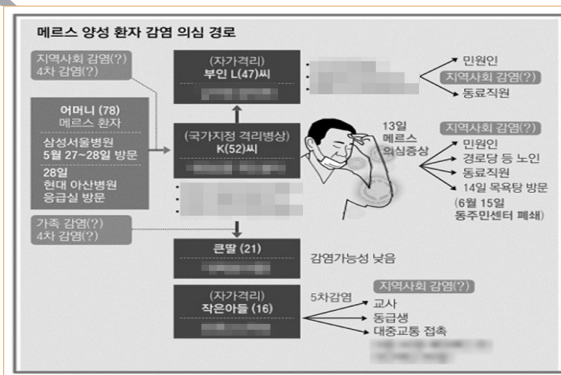
\* ( ) 안의 숫자는 %

### 가. 사생활 침해 등

위원회는 2014년 12월 인격영역의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인적 법익 침해 중 사생활 침해 등 건수는 2013년 23건, 2014년 25건이었으나 2015년 92건으로 급증하였다. 사생활 침해 등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공인의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해 촬영, 보도한 사례에 대해 대거 시정권고가 내려졌으며, 일반인의 초상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병실에 누워있는 대기업 회장과 사적 공간인 자택 내부에 있는 前 총리를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으며 메르스 확진 환자를 특정 한 사례도 있었다. 보도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를 다루었다고 할지라도 사적인 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인격권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언론사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례 | 사생활 침해



\*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나.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015년 한 해 동안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위반은 5건(1.1%)으로 2013년 35건, 2014년 16건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언론사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추어 피의자의 성·나이·근무지를 명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보도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였다. 다만, 흉악범이나 공개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 사례 | 피의자 신원공개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북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 ○○○○○○빌딩 ○층에 소재한 ○○○○클리닉 성형외과 (<http://www.○○○.net/○○○○의원>) 원장 ○○○(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하 생략)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다. 범죄수법 상세묘사

범죄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기사에 대해서 총 16건의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2014년 60건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 사례 | 범죄수법 상세묘사

#### 신용카드 위조 1분이면 똑딱

(전략) ○○○를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하고 데이터 인코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준비는 거의 끝난 셈이다. 이제 신용카드 개인정보와 이를 덮어씌울 실물 카드만 있으면 1분도 안 걸려 카드를 위조할 수 있다. (중략)

그렇다면 신용카드 개인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이 역시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 판매 글은 대부분 e메일 주소가 달랐지만 인터넷전화 스카이프나 통합 커뮤니케이터 네이트온 아이디(ID)가 같은 것으로 봐서 동일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이나 중국 메신저 ○○(○○) 사용을 선호했다. 이렇게 수집한 e메일 주소로 구매를 의뢰하자 한 명으로부터 답이 왔다. ○○○는 사용법을 포함해 30만 원, 명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V(카드 보안 코드) 정보가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정보는 건당 2만 원씩 25건 단위로 묶음 판매한다는 것. (이하 생략)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라. 자살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은 2013년 78건, 2014년 73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2015년 62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뿐만 아니라 직업과 근무지를 공개해 자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 또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회적 공인이라고 보기 힘든 사인(私人)의 자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자살자 또는 자살자의 유족 신원을 공개하거나 자살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로 시정을 권고 받은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일지라도 자살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보도,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예방책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사례 |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 공개

(전략) 숨진 A씨는 키 185cm, 몸무게 116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지병도 없었다. 부검 결과 사인(死因)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위장과 혈액, 간 등에서 검출된 ○○○ 성분. A씨의 혈중 ○○○ 농도는 L당 ○○mg에 달했다. 혈중 ○○○ 농도가 L당 0.○○mg 이하일 때 안전한 수준이고 0.○mg 이상이면 치사량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A씨는 치사량의 7배 가까운 ○○○에 중독됐던 셈이다.

A씨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갈색 유리병과 컵에서도 국과수 감식 결과 ○○○ 성분이 검출됐다. A씨가 죽기 한 달 전 친구들에게 “해외에서 산 약이 있는데 사람을 아주 빨리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과수는 “A씨가 병에 담긴 액상 ○○○을 마시고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 생략)

\* ‘○’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사례 | 자살자 신원공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TB 투자증권 건물 15층에서 물류회사인 ○○○○ 직원 ○모씨(○○·○)가 투신했다. ○씨는 투신 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 ‘○’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마.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마약류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2년 116건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3년 89건, 2014년 75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0건 늘어난 135건으로 급증하였다. 마약류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사건 수사 발표를 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되어 이를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 가격, 사용방법 및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거나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례 |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전략) 신씨 부부 등 2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채팅앱 ‘○○’ 등에서 만나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씩 모여 서울 강남 등지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마약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아시는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들이 연락해오면 다른 채팅앱 ‘○○○○’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을 팔거나 집단 성행위를 벌였다. 이들이 주고받은 필로폰의 양은 총 ○○g으로 1g당 ○○만~○○만원에 거래됐다. (이하 생략)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바. 충격과 혐오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는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충격과 혐오감으로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14건으로 2014년 13건과 비슷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남성의 사진을 게재한 13개 언론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 사. 기사형 광고

위원회는 2014년 12월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사형 광고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3월부터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를 실시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95건이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는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형식적, 내용적, 업종별 기준을 충족한 명백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만 시정을 권고하였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기사 형태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사례 | 기사형 광고

**‘지긋지긋했던 여드름... 72시간이면 잡는다’  
... [모자이크] 의원, ‘PSM 스피클링’**

효과 빠른 여드름 치료 ‘PSM 스피클링’ 필링 치료 도입

이정형 객원기자

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플립보드

자도파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한 이들에게, ‘치료’는 먼 일이었다. 피부과 치료나 피부관리실에서 케어를 받아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지긋지긋한 여드름은 끝없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염증으로 얼굴에 남아버린 흉터는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고민을 남기기도 했다.

한때 청춘의 상징으로, 쉬이 여겨졌던 여드름은 이제 본격적인 치료 대상으로 인식된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여드름 증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드름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잡아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치료법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드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이들에게도 속시원한 ‘해결법’이 등장한 것.



\* 원 보도내용에는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4. 매체 유형별 분석**

2015년 한 해 43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297건(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84건(19.2%), 뉴스통신 44건(10.0%) 주간지 10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3 1. 1. ~ 2015. 12. 31.)

구 분 연 도	총 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일 간 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2013	289 (100)	29 (10.0)	44 (15.2)	2 (0.7)		27 (9.3)	187 (64.7)
2014	302 (100)	47 (15.6)	37 (12.3)	4 (1.3)		36 (11.9)	178 (58.9)
2015	438 (100)	35 (8.0)	49 (11.2)	10 (2.3)	3 (0.7)	44 (10.0)	297 (67.8)

\* ( ) 안의 숫자는 %

2015년 인터넷신문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은 2014년 58.9%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 64.7%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심의대상 매체 중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를 차지할 만큼 매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법익 침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여전히 페이지뷰를 늘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부지급 기사도 많아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 제3절 평 가

위원회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과 언론 보도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기사와 유사한 형식으로 전달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으며,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한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438건으로 전년 302건 대비 45.0%나 증가하였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침해 보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으며, 마약 관련 보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처음 심의대상에 포함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를 통해 95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반면 범죄수법 상세묘사 보도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피의자 신원 공개 보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 현황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존 재택 인터넷신문 모니터요원을 사무실 상주 시정권고 심의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많은 인터넷신문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시정권고 심의대상 인터넷신문 매체수를 기존 1,000여 종에서 2,0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사회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언론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제 3 장

# 선거기사심의

### 제 1 절 개 요

####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심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심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부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되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재보궐선거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는 공직선거법이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그리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아울

러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예정대로 2015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선심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한다.

선심위는 해당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위반 수준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하고 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 가. 자체심의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선거기사 심의보조원 및 실무팀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해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선정하여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선심위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건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정한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 등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선심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

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2015년 4월 29일 치러진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서울 관악구을(국회의원), 강원 양구군(광역의원) 등 총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

국회의원(4)	서울 관악구을, 인천 서구·강화군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 중원구
광역의원(1)	강원 양구군
기초의원(7)	서울 성북구 아, 인천 강화군 나, 경기 광명시 라, 경기 의왕시 가, 경기 평택시 다, 전남 곡성군 가, 경북 고령군 나

선심위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운영기간(2015. 2. 28. ~ 2015. 5. 29.) 동안 자체심의 25건, 시정요구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주의가 18건(72.0%)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와 권고가 각 3건(12.0%)이었으며, 정정보도문 등 게재가 1건(4.0%)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가 21건(84.0%)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건(8.0%),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과 기고 등 위반이 각 1건(4.0%)이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12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10건(40.0%), 종합주간지 2건(8.0%), 뉴스통신 1건(4.0%)이다.

시정요구 2건은 공정성 및 형평성과 기고 등 위반이 각 1건이며,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 각 1개 매체에 대해 권고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표 28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5. 2. 28. ~ 2015. 5. 29.)

구분		위반유형					결정내용				
간별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여론조사 보도요건	광고 제한	기고 등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신문	중앙	10			10				1	7	2
	지역	12	1	1	9	1			1	10	1
종합주간지		2	1		1			1		1	
지역주간지		0									
월간지		0									
뉴스통신		1			1				1		
계		25	2	1	21	0	1	0	1	3	18

사례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변희재, 애국진영 시민후보 공천 4.29 재보선 관악월에 출사표 던져**



**변희재 인미협 회장, 애국진영 후보로 4.29 재보선 관악월에 출사표 던져**

‘애국진영 4.29 재보선 비상대책위원회’ 10일 총회에서 추천

\* 미디어워치는 위 기사를 비롯하여 2015년 3월 18일자 및 4월 1일자에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알리고 이를 지지하는 기사, 후보자의 저작물 광고 등 총 7건의 기사를 게재함

사례 |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에 따른 경고결정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한 위수)로부터 다음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음을 알립니다.

2015년 3월18일자 1~2면 '변희재, 애국진영 시민후보 공천 4.29 재보선 관악월에 출사표 던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18일자 5면 "무소의 불처" 제하의 칼럼

2015년 4월1일자 1~2면 "관악을 맞추고 각자 이색 후보 '눈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1일자 2면 "변희재, '변희재 할리우드 공인 자격 갖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1일자 3면 "변희재의 청춘 투쟁" 제하의 광고

2015년 4월1일자 5면 '변희재 예비후보의 완주와 당선을 기대한다' 제하의 칼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본지가 2015년 상반기 제·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알리는 기사, 후보자를 부각하는 기사, 후보자가 작성한 답사,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고, 후보자의 자서전 광고 등을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보도한 반면 여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누락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법 제93조(발행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13조(특정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123조(연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결정문

사례 | 후보자 시정요구(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어머니의 절규

4월재보궐선거 공식선거일이 시작된 4월16일에 한홍의 재보전 회를 받고 본지 기사는 그분을 만나려 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주 앞서서 정황을 물어보았다.  
그분은 2002년 김근에 위치한 \*신동근 치과\*를 찾아갔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 진료를 받게 되었다.  
6살짜리 큰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데, 기구를 이용해서 입을 벌리려고 하니 6살 된 아이는 아픔을 토로하고...그 당시 3살된 둘째 딸이 울어서 어머니는 둘째 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밖에 있는 본에게 잠시 말하고, 진료실이 들어서는 순간, 신동근

씨는 엄마가 없는 줄 알고 6살짜리 큰아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신동근 치과의사"를 보게 된다. 한번 가슴을 내리치자 아이가 더 크게 울었고 또다시 팔에 힘을 실어 가슴을 힘껏 내리치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엄마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을 "왜왜 왜 아이를 때려요?"라고 하자 당황하며 얼굴 빨개지던 신동근씨의 모습을... 엄마는 지금도 너무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치 "인간"에서 벌어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처럼...  
그순간 어머니는 '신동근 치과의사'에게 항의를 하고, 나중에 한 어머니의 12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신동근 치과의사'는

3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만다.  
이번 4월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2016년 총선에도 만약에 "신동근 치과의사"가 "국회의원"에 나오면 그 어머니는 또다시 "신동근 낙천운동"을 할 것이라 고 한다.  
그때 6살짜기 어린아이는 지금은 21살이 된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 또한 평생 그 충격속에서 살아갈것이다.  
어머니는 본지 기사에게 마지막 으로 한 말씀을 한다.  
"그때 당시 진심으로 그 엄마에게 "신동근 치과의사"가 자신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면 용서했을 것이라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인정할줄도 모르는 인면수심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은 아무나는 안뽑

니다. 정치는 그런 사람이 하면 세 나 소나 아무나 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본지 기사는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김근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서 어머니의 사연을 물어보았다.  
환장중에 사는 주부인 김00씨는 그 사연을 안다고 했다.  
"그 어머니는 김근에서 살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적도 없고, 주위 평기도 좋고...가치말을 하신분도 아니고...또한 그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는 자신 또한 '신동근' 씨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털어놓는다.  
왕길동에 사는 68살 모씨는 이 00씨는 평상시에 그 "어머니"를 잘 알고...그 얘기를 듣고는 자신의 일처럼 본개하시며, 노인정을 바꿀까

서 돌아다니며, 주위분들에게 '신동근'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하겠다고 한다.  
낙선 운동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서를 받았다고 하여 증빙서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오래되어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아닌 사건번호로 되어있기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담당 경찰에게 찾아달라고 사정하여 그 당시 증명서류를 통해 결국 찾아 내었다.  
한 어머니의 "절규"...그것을 들은 날이 바로 "세월호 1주기"가 벌어진 4월16일이다.  
세월호 사건이 그 여인 아이를 들었던 그 순간처럼...  
한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사연을 접하며, 이 사내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사를 하며...본지 기사는 김근의 인터뷰를 마쳤다.

\* 지역주간지 강화섬소식은 4월 25일자 지면에 특정 후보가 과거 의사로 활동하던 시절 병원에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반론 취재 없이 게재하였고, 후보자 측은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결정되었음

사례 |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한위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지는 4월 25일 「어머니의 절규」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서구 강화읍 선거구에 출마한 신동근 후보자에 관하여, "엄마가 없는 줄 알고 6살짜리 큰아들의 가슴을내리치는 "신동근 치과의사"를 보게 된다. 한번 가슴을내리치자 아이가 더 크게 울었고 또다시 팔에 힘을 실어 가슴을 힘껏 내리치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이의의 어머니가 신동근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동근 후보자측은 어린이가 치료 중 많이 움직이는 경우 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고 치료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 도 취해진 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례 |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주의 결정)

與도 野도 텃밭 고전... 부동산 많아 변수

4·29 재보선 초반 판세

날짜 2014.04.29 14:00

4·29 재보선 초반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텃밭에서 고전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예상보다 선전하는 새누리당도 연방에서는 예외 없고 있다.  
승연일보 여론조사연구팀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3월31일, 지난 1일 600명 대상)로 실시, 오차범위는 95%, 신원수는 ±4%포인트(90% 미만)였다. 가장 강한 서울 관악구에서 새누리당 오선환 후보가 34.3%의 지지율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15.9%)와 국민모임

관악을-경주 서울 새정치연합 뒤져 인천 서-강화읍은 與후보와 결전 성남중원선 야권 표 분산 與 유리 기간 짧아 남교 부동산 표심 변수

정동영 후보(13.3%)를 앞도했다. 경주 서우울에서는 무소속 권형배 후보가 28.7%를 얻어 새정치연합 조영태 후보(22.8%)를 앞섰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9.6%였다. 이들 2곳에서 새정치연합이 당초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야권 후보 난립으로 2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당 세가 강한 인천 서-강화읍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한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에게 격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신 후보가 안 후보보다 3%포인트 앞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사에서 옛 경기도부연합의 근거지인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김미희 한동행전교당 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따른 야권표 분산 효과에 힘입어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반 판세와 달리 결과는 선

황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선거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 야권 심할 부동산의 표심 등 변수가 많아서다. 순회용 오피스텔이 많아 여론분석 센터장은 통화에서 "관악은 정동영 후보가 텃밭의 명분은 알지만 설득력이 있게 설명하고 배신 프레임용 견여나 느냐, 야권 지지층이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 중 어느 인물의 경쟁력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한 후보가 지역도에 비해 월등히 우세를 보이지 않는 곳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서원할과 예정을 동시에 가진 유권자가 배신 프레임용 같은 한 후보자를 선뜻 지지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야권 지지층의 적당 표출력이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가 관건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세계일보에는 4월 4일자 지면에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비공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등을 위반하였음

## 2.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기초단체장), 서울 영등포구 제3(광역의원) 등 총 24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

기초단체장(1)	경남 고성군
광역의원(9)	서울 영등포구 제3, 부산 부산진구 제1, 부산 기장군 제1, 인천 부평구 제5, 인천 서구 제2, 경기 의정부시 제2, 경기 의정부시 제3, 경기 광명시 제1, 전남 함평군 제2
기초의원(14)	서울 양천구 가, 부산 서구 다, 부산 해운대구 다, 부산 사상구 다, 인천 남구 다, 인천 부평구 나, 울산 중구 나, 경기 김포시 나, 강원 홍천군 다, 충북 증평군 가, 전남 목포시 라, 전남 신안군 나, 경북 울진구 다, 경남 사천시 라

선심위는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운영기간(2015. 8. 29. ~ 2015. 11. 27.) 동안 자체심의 6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권고가 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가 1건(16.7%)이었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6건이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가 각 3건이다.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의결 건수가 타 재보궐선거에 비해 적은 이유는 2015년 7월 국회에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 시행 이전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지역에서만 선거가 치러져, 선거구가 줄어들고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9 |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5. 8. 29. ~ 2015. 11. 27.)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 별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보도요건	광고 제한	기고 등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 신문	중앙	0									
	지역	3	3							1	2
종합주간지	0										
지역주간지	3	3									3
월간지	0										
뉴스통신	0										
계	6	6	0	0	0	0	0	0	0	1	5

## 김포시의회 나선거구 ‘2파전’ 예고

새누리 김종혁-새정치 채신덕  
각각 당 경선서 최다 득표

현재 공식중인 김포시의회 나선거구 (김포1동·장기동)의 10월28일 재선거가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채신덕 후보의 2파전으로 치뤄질 전망이다.

권오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뤄지는 김포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는 지난 7일 나선거구 당원 483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4명에 대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240표(48%)로 최다 득표한 김종혁 후보를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지역위원회는 20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나선거구 권리당원 87명 가운데 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28표(56%)를 받은 채신덕 후보를 재선거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채 후보는 22표(44%)를 받은 서현석 예비후보 보다 6표를 더 얻었고 새정연 경기도당이 18일과 19일에 실시한 일반



김종혁



채신덕

주민 전화여론조사에서도 52.1%를 받아 47.9%의 서현석 후보를 앞섰다.

채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전화여론 조사의 합산 경선 결과 54.95%로 앞서 45.05%의 서현석 예비후보 보다 9.8%를 이겼다.

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전에 본격 돌입한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재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직선거에 비중을 두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승리해서 종전의 시의원 5대5 황금비율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새정연 김포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재선거를 통해 의원 1명을 추가 당선시켜 시 집행부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종승기자

\* 중부일보는 9월 22일자 지면에서 2명의 후보 사진만을 게재하고 ‘2파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소속 후보 1명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음

## 제3절 평 가

선심위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구 관련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일간지 및 지역주간지에 대해 교차 검토 등의 방법으로 집중 심의해 안건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25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최근 3년간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의결 건수로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선심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투표마감시까지 중양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공표나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및 제8항의 내용을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2015년 9월 개정하였다. 하지만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양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면서 개정 규정은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사과문 게재명령이 위헌(2013헌가8)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및 심의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양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개편하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에 대해 중양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선심위의 심의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